

취업규정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한다)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대체공휴일)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공단 주휴일에 맞추어 적용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연차휴가 당겨쓰기) 이사장은 직원이 제28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차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차휴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5년 미만	10

제29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모 휴가

제29조의3 중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을 “참여하거나 휴업·휴원·휴교, 자녀 병원 진료를 하는 경우 연간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로 한다.

제29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부모 휴가)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매 분기 1일의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0조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7, 제30조 개정사항은 공무원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휴일) ①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2. <u>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u> 3. <u>1월 1일</u> 4. <u>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u> (음력 12월말일, 1월1일, 2일) 5. <u>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u> 6. <u>5월 5일(어린이날)</u> 7. <u>6월 6일(현충일)</u> 8. <u>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u> 9. <u>12월 25일(기독탄신일)</u> 9의2. <u>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u> 10. <u>근로자의 날</u> 11. <u>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u> ② (생략) 제25조의2(대체공휴일) ① 제25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5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25조(휴일) ①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2.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대체 공휴일</u> 3. <u>노동절</u> 4. <u>~ 11. <삭 제></u>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대체공휴일)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 공휴일은 <u>공단 주휴일에 맞추어 적용한다.</u>

1.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공휴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과
겹치는 경우

<삭 제>

2.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의
공휴일이 화요일과 겹치는 경우

<삭 제>

3. 제25조제1항제2호 · 제4호 · 제6호
또는 제8호의 공휴일이 월요일
· 화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
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
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
휴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
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28조의2(연차휴가 당겨쓰기) 이사장
은 직원이 제28조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차 휴
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부터 제4
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차휴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u>재직기간</u>	<u>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u>
<u>1년 미만</u>	<u>5</u>
<u>1년 이상 2년 미만</u>	<u>6</u>
<u>2년 이상 3년 미만</u>	<u>7</u>
<u>3년 이상 4년 미만</u>	<u>8</u>
<u>4년 이상 5년 미만</u>	<u>10</u>

제29조(특별휴가) ①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포상휴가
4. 청원휴가
5. 삭제
6. 삭제
7. 자녀입영휴가
8. 자녀돌봄휴가
9. 재해구호휴가
10. 장기재직휴가
11. 배우자 출산휴가

<신 설>

② (생 략)

제29조(특별휴가) ①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포상휴가
4. 청원휴가
5. 삭제
6. 삭제
7. 자녀입영휴가
8. 자녀돌봄휴가
9. 재해구호휴가
10. 장기재직휴가
11. 배우자 출산휴가
12. 부모 휴가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직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30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2.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 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3. 공무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해,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5.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에 따라 공직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때

제29조의3(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직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휴업·휴원·휴교, 자녀 병원 진료를 하는 경우 연간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7(부모 휴가)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매 분기 1일의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0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기간 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2.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 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3. 공무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소환된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해,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5.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에 따라 공직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때

<신 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
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 설>

7.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
할 때